

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 완료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개요	[] 청산의 경우	•청산대상 사업장명(상호): •현지 청산 신고기관:			
		청산신고기관 전화		청산신고기관 팩스	
	[] 양도 (매각)의 경우	•양도(매각)대상 사업장명(상호): •양도(매각)가액: •양수자(매수자):			
		양수자(매수자) 전화		양수자(매수자) 팩스	
청산·양도 완료일	선정 신청일			(접수기관이 기재)	
	국내사업장 신설·증설 완료일			(접수기관이 기재)	
	[] 청산의 경우	청산종결 등기일			
		청산인의 최종신고일			
		조세관련 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			
		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청산완료일			
	[] 양도/지분매 각의 경우	사업양수·양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가 잔금수령일			
		해외지분 매각·처분 대가 잔금수령일			
		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양도완료일			

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(뒤쪽)

첨부서류

신청인(신고인) 제출서류	1.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(청산종결 등기 신고서·접수증, 청산인 신고서·접수증, 폐업 신고서·접수증 등) 2. 사업 양수·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. 사업 양수·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4.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.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[]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합니다.
2. 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 완료 신고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한 기업만 작성합니다.
3. 청산·양도 완료일 관련사항은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.
4. 선정 신청일과 국내 사업장 신설·증설 완료일은 접수기관이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